

##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5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9 . .
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### 1. 제안이유

가축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가축분뇨 수집·운반수수료 인상(안 제6조) 별표 2

- 가축분뇨(허가대상) 100ℓ당 : 1,100원 ⇒ 1,170원(70원↑)
- 가축분뇨(신고대상) 100ℓ당 : 1,090원 ⇒ 1,150원(60원↑)
- 가축분뇨(신고미만) 100ℓ당 : 1,080원 ⇒ 1,140원(60원↑)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

3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접수사항 없음.

4. 기타 참고사항 : 따로붙임

붙임 : 가.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

나, 신구조문대비표

다. 기타참고사항 (관계법령)

##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명 “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해당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”를 “공공처리시설에서”로, “아니하는”을 “않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등으로 인하여”를 “등으로”로, “인정하는 경우”를 “인정할 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“있는 경우”를 “있을 때”로 하며, 같은 호 후단 중 “이 경우”를 “다만,”로, “우선적으로”를 “먼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수집·운반함에 있어”를 “수집·운반함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체결함에 있어”를 “체결함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축산분뇨”를 “가축분뇨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”을 “내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배출자에 대하여”를 “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”으로, “다음 각 호와 같이”를 “면제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가축분뇨 수집·운반업자에게 다음”으로, “경우”를 “때”로 한다.

제12조제1호 중 “축산분뇨”를 “가축분뇨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  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의 가축수집·운반수수료 및 사용료 인상분은 2013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2]

**가축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** (제6조 관련)

부과기준	수수료 및 사용료(원)			
	배출신고 대상 별	수집·운반 수수료	공공 처리 시설사용료	계
100리터당	허가대상	970	200	1,170
	신고대상	1,000	150	1,150
	신고미만	1,030	110	1,140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제4조(공공처리시설의 운영) <u>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	<p><u>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시행에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(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해당할 때</u> -----</p> <p>----- <u>에는 그렇지 않다.</u> 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공공처리시설의 운영) <u>공공처리시설에서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않는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.</u>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<u>등으로</u> 인하여 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 <p>2.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.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<u>우선적으로</u> 반입하여야 한다.</p>	<p>1. ----- ----- <u>등으로</u> ----- ----- ----- <u>인정할 때</u></p> <p>2. ----- ----- <u>있을 때. 다만,</u> ----- ----- <u>먼저</u> -----.</p>
<p>제5조(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대행)</p> <p>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<u>수집·운반함에 있어</u> 능률적인 처리 또는 축산농가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·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<u>체결함에 있어</u>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5조(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대행)</p> <p>① ----- <u>수집·운반함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체결함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사용료 납부방법 등) ① 대행자는 공공처리시설에 <u>축산</u></p>	<p>제7조(사용료 납부방법 등) ① ----- <u>가축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분뇨</u>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<u>분뇨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시장은 대행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<u>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.</p>	<p>③ ----- ----- <u>내지 않거나</u> <u>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</u> ----- -----.</p>
<p>제8조(수수료의 감면) ① 시장은 가축분뇨 <u>배출자에 대하여</u> 수집·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<u>다음 각 호와 같이</u> 감면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수수료의 감면) ① ----- ----- <u>배출자가 다음 각 호의</u> <u>어느 하나에 해당하면</u> ----- ----- <u>면제하거나</u> ----- -----.</p>
<p>1. ~ 3. (생략)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·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감면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.</p>
<p>제9조(대행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) 시장은 대행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대행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0조(가축분뇨 수집·운반업자 유고시 처리) <u>다음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제12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공처리시설 관리·운영자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<u>축산분뇨</u> 수집·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및 감면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[별표 7]</p> <p><b>가축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</b> (제6조 관련)</p>	<p>제10조(가축분뇨 수집·운반업자 유고시 처리) <u>가축분뇨</u> 수집·운반업자에게 <u>다음</u> ----- <u>때</u>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가축분뇨</u> 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시행규칙)-----<u>시행에</u> -----.</p> <p>[별표 7]</p> <p><b>가축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</b> (제6조 관련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부과 기준</th> <th colspan="4">수수료 및 사용료(원)</th> </tr> <tr> <th>배출신고 대상 별</th> <th>수집·운반 수수료</th> <th>공공 처리 시설 사용료</th> <th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100 리터 당</td> <td>허가대상</td> <td>900</td> <td>200</td> <td>1,100</td> </tr> <tr> <td>신고대상</td> <td>940</td> <td>150</td> <td>1,090</td> </tr> <tr> <td>신고미만</td> <td>970</td> <td>110</td> <td>1,08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과 기준	수수료 및 사용료(원)				배출신고 대상 별	수집·운반 수수료	공공 처리 시설 사용료	계	100 리터 당	허가대상	900	200	1,100	신고대상	940	150	1,090	신고미만	970	110	1,080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부과 기준</th> <th colspan="4">수수료 및 사용료(원)</th> </tr> <tr> <th>배출신고 대상 별</th> <th>수집·운반 수수료</th> <th>공공 처리 시설 사용료</th> <th>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100 리터 당</td> <td>허가대상</td> <td>970</td> <td>200</td> <td>1,170</td> </tr> <tr> <td>신고대상</td> <td>1,000</td> <td>150</td> <td>1,150</td> </tr> <tr> <td>신고미만</td> <td>1,030</td> <td>110</td> <td>1,14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과 기준	수수료 및 사용료(원)				배출신고 대상 별	수집·운반 수수료	공공 처리 시설 사용료	계	100 리터 당	허가대상	970	200	1,170	신고대상	1,000	150	1,150	신고미만	1,030	110	1,140
부과 기준		수수료 및 사용료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배출신고 대상 별	수집·운반 수수료	공공 처리 시설 사용료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0 리터 당	허가대상	900	200	1,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신고대상	940	150	1,09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신고미만	970	110	1,0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과 기준	수수료 및 사용료(원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배출신고 대상 별	수집·운반 수수료	공공 처리 시설 사용료	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0 리터 당	허가대상	970	200	1,17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신고대상	1,000	150	1,15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신고미만	1,030	110	1,14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관계법령

### 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26조(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수집·운반업자"라 한다)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·운반하게 할 수 있다.

② 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수집·운반업자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수집·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,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 시설의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